

「생물안전관리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6. 2. 29. 제정 판 (시행 2016. 3. 1.) → 2020. 2. 24. 개정 판 (시행 2020. 1. 1.)

바뀐 2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72/compare?from=425&to=949> · 내려받은 때 2026. 10. 22. 오후 8:20:52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방법) ① 위원회는 <u>교무처장(위원장), 시설과선임팀장(서기), LMO관련 교수(5), 생물안전관리자로</u>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혹은 총장 선임)하며, 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5명 이상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촉 외부위원: 생명과학, 의과학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⑤ 간사위원 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이외에 <u>생물안전관리실무자, 의료관리자, 시설안전관리자, 행정인력</u> 등을 들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방법) ① 위원회는 <u>연구산학처장(위원장), 연구산학팀장(서기), LMO관련 교수(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실무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외부위원으로</u>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혹은 총장 선임)하며, 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5명 이상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촉 외부위원: 생명과학, 의과학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⑤ 간사위원 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이외에 <u>의료관리자, 행정인력</u> 등을 들 수 있다. <개정 2020-02-24>
제10조(생물안전관리자) ① 생물안전관리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생물안전 전반에 관한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② 생물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생물안전 확보 전반에 관한 실무 2. 생물안전 교육·훈련 실시 3. 순회 점검 및 생물안전 관련 수칙 이행 감독 4. 생물안전관련 사고 조사 및 대응과 보고에 관한 실무	제10조(생물안전관리실무자) <개정 2020-02-24> ① 생물안전관리실무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생물안전 전반에 관한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② 생물안전관리실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생물안전 확보 전반에 관한 실무 2. 생물안전 교육·훈련 실시 3. 순회 점검 및 생물안전 관련 수칙 이행 감독 4. 생물안전관련 사고 조사 및 대응과 보고에 관한 실무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조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생물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방법) ① 위원회는 연구산학처장(위원장), 연구산학팀장(서기), LMO관련 교수(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실무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혹은 총장 선임)하며, 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③ 위원: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5명 이상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 ④ 위촉 외부위원: 생명과학, 의과학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 ⑤ 간사위원
- 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이외에 의료관리자, 행정인력 등을 들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생물안전관리자"를 "생물안전관리실무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생물안전관리자"를 각각 "생물안전관리실무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